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7.	19.
개정	2016.	8.	26.
개정	2017.	2.	16.
개정	2017.	4.	3.
개정	2017.	8.	28.
전부개정	2020.	10.	23.
개정	2020.	11.	5.
개정	2022.	12.	26.
개정	2024.	7.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장 임기만료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29조제6항에 따른 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일을 회장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까지 확정하고, 이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0.]

제2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회장선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선거인 수의 배정
2.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정책토론회 주최
7.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8.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9. 정관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6.>

1. 체육회 대의원,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인 시·군·구체육회(이하 “회원단체등”이라 한다)의 대의원, 임직원
3. 제1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제출한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의 비상임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당의 당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회가 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언론계 등 관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④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9명 미만이 될 경우, 제2항의 관계단체로부터 이미 추천된 사람 중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보선 대상자를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9명 미만이 될 경우,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선 대상자 결정의 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체육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관리 위탁신청) 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20.>

제6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② 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

제7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일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체육회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8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6.>

1. 정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
2. 회원종목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과 대의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중에서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등, 선수, 지도자 중에서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4. 시·군·구체육회(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등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1명과 각 단체별 예비선거인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선거인은 선거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6.>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선거인이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인 경우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단체의 임원인 경우 재임하고 있어야 함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④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등 명단 제출) ① 회원단체등은 예비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 기준 단체별 임원등의 명단을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등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단체별 임원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등에 대한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9조의2(시·군·구체육회 선거인 추천의 요청) ① 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제8조제1항제4호의 선거인 구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임원등의 명단을 제출한 시·군·구체육회에 해당 단체의 임원등 중 선거인 1명(이하 “지정선거인”이라 한다)을 회장 임기만료일 전 65일까지 추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군·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선거인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체육회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지정선거인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군·구체육회가 지정선거인을 위원회에 추천한 이후에는

선거인을 교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10조(선거인 수 배정 기준) ① 위원회는 정관 제24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회원단체등에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개정 2022. 12. 26.>

1. 정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4명
2. 준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2명
3. 삭제 <2022. 12. 26.>
4. 시·군·구체육회: 각 단체 당 2명

② 위원회는 정회원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7. 20.>

1.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채택된 종목을 관장하는 다음 각 목의 정회원종목단체(단, 종목의 채택 여부는 회장선거일 직후 개최되는 대회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종목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직전 대회를 기준으로 함)

가. 올림픽대회 종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6명

나.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3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2.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전문체육목적으로 18세이하부, 대학부 및 일반부 선수로 등록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2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3.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육성목적으로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선수로 등록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2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4.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18세이하부, 대학부 및 일반부 지도자로 등록한 사람(단, 제6호의 생활체육목적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

5.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지도자로 등록한 사람(단, 제6호의 생활체육목적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

6.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생활체육목적으로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로 등록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4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2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

7.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종목단체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4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2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

8.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단, 제6호의 생활체육목적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 <신설 2022. 12. 26.>

9.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한 사람(단, 제6호의 생활체육목적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종목단체: 각 단체 당 1명 <신설 2022. 12. 26.>

③ 위원회는 정회원시·도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7. 20.>

1. 소재지 시·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3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2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1명

2.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소재지 시·도로 등록한 18세이하부, 대학부 및 일반부 운동부 수(생활체육목적 운동부를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6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4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2명

3.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소재지 시·도로 등록한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운동부 수(생활체육목적 운동부를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6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4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2명

4. 소재지 시·도의 체육예산이 시·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가.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3명

나.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2명(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다. 그 외의 정회원시·도체육회: 각 단체 당 1명

④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심판 수, 등록 선수관리담당자 수, 등록 운동부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하며,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학생 수와 시도별 인구수, 체육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개정 2022. 12.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거인 수 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이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가 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2항제1호가목의 올림픽대회 종목 정회원종목단체에 선거인 수를 추가 배정한다. 이 경우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은 제8조제1항제1호의 대의원 중 올림픽종목을 대표하는 대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6.>

⑥ 위원회는 체육회 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단체별 선거인 수에서 임원등 직군의 선거인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단체 선거인 수로 배정한다. 이 경우 임원등 직군의 선거인 수는 단체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30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단체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의 직군(임원등,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개정 2022. 12. 26.>

1. 각 단체의 직군별 비율은 각각 배정된 선거인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하며, 각 직군 선거인 수의 합은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와 같다.

2. 삭제 <2022. 12. 26.>

3. 각 직군별 추천 가능한 예비선거인 수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준회원단체에 대하여 직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배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회원단체등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정한 선거인 수를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제11조(예비선거인 추천)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10배수 범위 안에서 추천할 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각 단체에 동일한 배수를 적용하되, 추천 가능한 예비선거인 수가 배정된 수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9조에 따른 체육회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1항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정한 수만큼 예비선거인을 추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선거인을 추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재임 중인 임원등과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2. 다음 각 목의 선거인을 제외하고 추첨한다.

가. 정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인

나. 제9조의2에 따른 시·군·구체육회 지정선거인

3. 동일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군 또는 단체에 등록된 경우, 중복으로 추첨되지 않도록 한다.

④ 각 단체별로 추첨된 예비선거인 중, 임원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이하 “개인정보 동의”라 한다)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첨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12조(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추첨하여 선정된 예비선거인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예비선거인 중에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1. 정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인
2. 제9조의2에 따른 시·군·구체육회 지정선거인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할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날부터 3일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은 열람기간 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을 통해 위원회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선관위, 신청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④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⑤ 후보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2024. 7. 20.>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⑧ 후보자와 제20조의 선거사무원등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1.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⑨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5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정관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의 비상임임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체육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③ 회원단체등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원단체등의 정관에 따라 회원단체등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회원단체등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6.>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회원단체등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개정 2022. 12. 26.>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회원단체등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정하여 회원단체등을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 단체관련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국제체육기구가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회원단체등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26.>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⑧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등 비상임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⑨ 체육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7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관위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2022. 12. 26.>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다.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정관 제30조제1항의 단체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 라. 정관 제24조의2제1항 및 이 규정 제15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의2제6항 및 이 규정 제15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회 및 회원단체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4. 회장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5. 제16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 ③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④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

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선거법」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이하 “선거사무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② 선거사무원등은 체육회 및 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단체의 회원 및 지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선거사무원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선거사무원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선관위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교체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등의 수는 5인을 넘을 수 없다.

⑤ 선거사무소의 게시사항, 선거사무원등의 수당 및 실비지급 기준 등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1.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2.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위원회가 주최하는 1회 이상의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단,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2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7.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8.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② 선거사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3.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22조(선거운동 제한) 제21조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6.>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제24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정 2022. 12. 26.>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6.>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6.>

제26조(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6.>

제27조(사위투표 금지)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선관위의 위원·직원, 「위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회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파손, 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제29조(기부행위 제한) ①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위탁선거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20.>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④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정당 등 표방 금지)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은 제21조에 따른 선거운동시 또는 「위탁선거법」 제30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체육회 임직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6.>

② 체육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6.>

1.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3.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4. 제6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5. 제6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③ 체육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한다.
- ⑤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기간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32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33조(시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42조제1항 이외의 회
장선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또는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이하
“신고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
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등을 접수한 경우, 선거 위반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
을 연기할 수 있다.

제35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 및 동법 시
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재하여
야 한다.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나. 선거사무원등의 자격박탈

다. 선거권 박탈

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
계 요청(추후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

회, 시·군·구체육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
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2. 제1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요청, 경고 또는 시정명령(1차에 한정한다)을 하여
야 한다.

가. 삭제 <2022. 12. 26.>

나. 삭제 <2022. 12. 26.>

다. 삭제 <2022. 12. 26.>

라. 삭제 <2022.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

2. 제1항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③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1.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2.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⑤ 회원단체등의 대표자나 회원단체등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그
회원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본 조에 따라 행

위자를 제재하는 외에 회원단체등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회원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2. 26.>

제6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6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7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삭제 <2022.12. 26.>

제3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기탁금의 처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40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

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에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6.>

제41조(회장 당선인 공고) 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5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부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47조(위원회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35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갖는다.

- ② 누구든지 선거 위반행위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금지행위 등의 금지) 체육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그 적용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체육회는 예비선거인 추천 및 예비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인 추천 및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회장선거 사무의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22. 12. 26.>

제50조(선거사무 지원) ① 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설치를 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체육회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51조(선거운영의 예외 등) ① 이 규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를 거쳐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2조(시행세칙)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법령과의 관계)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부 칙 (2020. 10. 23.)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2.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선거인-회원단체등의 임원 및 대의원)

[단체명 :]

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운영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예비선거인(회원단체등의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군, 소속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예비선거인 및 선거인 추천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추첨을 통해 선거인으로 선정 시) * 투표시 본인 확인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개인 이메일)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① 회장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② 관할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개인이메일)	①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② 선거법규·절차 안내 통지 ①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② 선거법규·절차 안내 통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인 명부 작성* * 투표시 본인 확인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 이메일)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체육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대한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체육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징계내역 > ※ 위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만 작성	
① 징계내용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선수관리담당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② 징계내용 2	
	이하생략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회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결정된 제 ○○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대 한 체 육 회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체육회장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서명)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